

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지침(폐지)

제 정	:	2003. 10. 1.
개 정	:	2009. 10. 1.
개 정	:	2011. 8. 29.
개 정	:	2013. 9. 1.
개 정	:	2016. 3. 1.
개 정	:	2016. 9. 1.
개 정	:	2017. 6. 20.
개 정	:	2018. 5. 21.
개 정	:	2020. 2. 17.
개 정	:	2020. 6. 15.
개 정	:	2022. 2. 25.
폐 지	:	2026. 3. 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원의 강의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정함으로서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칙 제61조에 의거한 교원의 책임시간 설정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
제3조(책임시간) ①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의 보직을 맡은 교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. 다만, 두 개 이상의 겸임 보직의 경우 상위보직(또는 동일보직)에 대한 책임시간을 적용한다. <개정 2020. 2. 17., 2022. 2. 25.>

②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강의는 책임시간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로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책임시간 조정을 요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연구수행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학 업무과약 또는 정책과정 수행 시 책임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.

제4조(강의시간) ① 강의시간은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하여 산출한다.

② 삭제 <2020. 2. 17.>

③ 2인 이상의 교수 또는 강사가 공동으로 강의하는 경우에 교수, 강사별 강의시간은 참여한 교수 또는 강사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
④ 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책임시간외에 처장급의 경우 5시간, 기타보직자의 경우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21시간 이내로 한다.

⑤ 제4항의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이 승인하여 강의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.

제5조(강의료의 지급) 강의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

1.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본 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경우의 특별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
2. 전임교원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주당 강의시간이 별표 1의 보직에 따른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시간 수에 해당하는 초과강의료는 매 학년도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단, 비전임교원(강사 제외)의 경우 임용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3.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강사의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강의한 시간 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매 학년도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4.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연구원이 담당한 강의료는 정규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주당 6시간까지 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단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9시간까지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7., 2020. 6. 15.>
5.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가 담당한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주당 3시간까지 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산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6.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담당한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주당 3시간까지 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산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20. 6. 15.>
7. 삭제 <2020. 6. 15.>
8. 삭제 <2020. 6. 15.>

제6조(책임시간의 보충) ① 교원의 강의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계속 보충하도록 하며 책임시간의 보충으로 인하여 초과된 시간은 이를 책임시간의 초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책임시간의 보충은 매 학년도 범위내로 한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책임시간을 보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7조(대단위 강의료 등) ① 삭제

② 시간강의료의 지급 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출강하기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와 원거리에서 출강하는 경우는 실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수강인원이 대단위인 강의 교과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.

제8조(강의료 지급일) 강의료는 학기당 지급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.

제9조(방학 중 강의료 지급) 삭제

제10조(세부사항) 삭제

부 칙

이 지침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단 이 개정 지침중 제3조 1항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개정지침 중 제3조 1항 및 제6조 1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.

[별표 1] 보직에 따른 감면시간 <개정 2022. 2. 25.>

구 분	감면시간
부총장	6
처장	5
대학원장, 학부장, 산학협력단장	3
총사감	1
※ 그 외 2개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거나 대학정책 및 운영상 책임시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	

[별표 2] 교과목 유형별 강의시간 인정률 삭제

[별표 3] 대단위 강의료 지급기준

수 강 인 원	지 급 률	비 고
50-100명	시간당 강의료의 30%	
101명 이상	시간당 강의료의 50%	